

● 제28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8. 8. 3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92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이동현 의원 외 13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18. 8. 16.
- 다. 회부일 : 2018.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과 청년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의식 및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대변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등 청년관련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년문제는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어 서울시 각 실·국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함.
- 따라서 청년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청년관련 조례 제·개정 및 청년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2.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¹⁾은 청년문제가 국가적 재난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의 일자리, 복지, 주거, 청년 일반 정책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²⁾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³⁾
 - 우리나라의 15~29세 인구 928만2000명 중 청년고용률이 42.1%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로 OECD 35개국 중 30위에 해당함(2017년 기준).
- 또한 2018년 3월 관계부처 합동 회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애로청년계층*도 112만명(22.7%)에 이르는 등 청년 실업난이 심각함.⁴⁾

*실업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1)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

2) OECD 국가 청년 고용률 순위, OECD 통계

3) ‘한국청년 고용률 42%, OECD 중 최악’ 중 OECD 통계자료, 매일경제, 2018. 7. 10

4)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2018. 3. 5.

- 아울러 통계청의 ‘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관련 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며 연령대별 고용률은 청년층(15세~29세)이 43.1%로 심각한 수준임.⁵⁾
- 또한 ‘90년대 이후 청년고용률은 전체실업률과의 격차가 2배로 확대되는 등 부진이 심화되었고, 청년 체감실업률도 통계 작성(‘15년) 이후 20% 지속 상회하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청년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전체/청년 실업률 격차(%): 90년대 3.4%p (3.3/6.7) → ‘17년 6.1%p (3.7/9.8)
청년 체감실업률(%): (‘15)21.9, (‘16)22.1, (‘17)22.7

※ 출처: 관계부처합동회의(2018. 3. 청년일자리 대책)

- 청년층은 사회에 최초로 진입하는 이행기로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공적 지원대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국가 재난수준의 청년고용 문제는 청년 주거빈곤⁶⁾, 부채, 실업 등의 문제로 확대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청년 인적 자원을 사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다면 국가 미래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세대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 문제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 할 수 있음.

5) ‘18. 07,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서울시 1인가구 청년(20세 ~34) 주거빈곤율 37%(2015), 한국도시연구소.

*주거 빈곤 비율: 최저주거기준(방수·면적·시설기준)미달, 지하·옥탑 거주 또는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과도한 주거비 부담(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30% 초과)에 해당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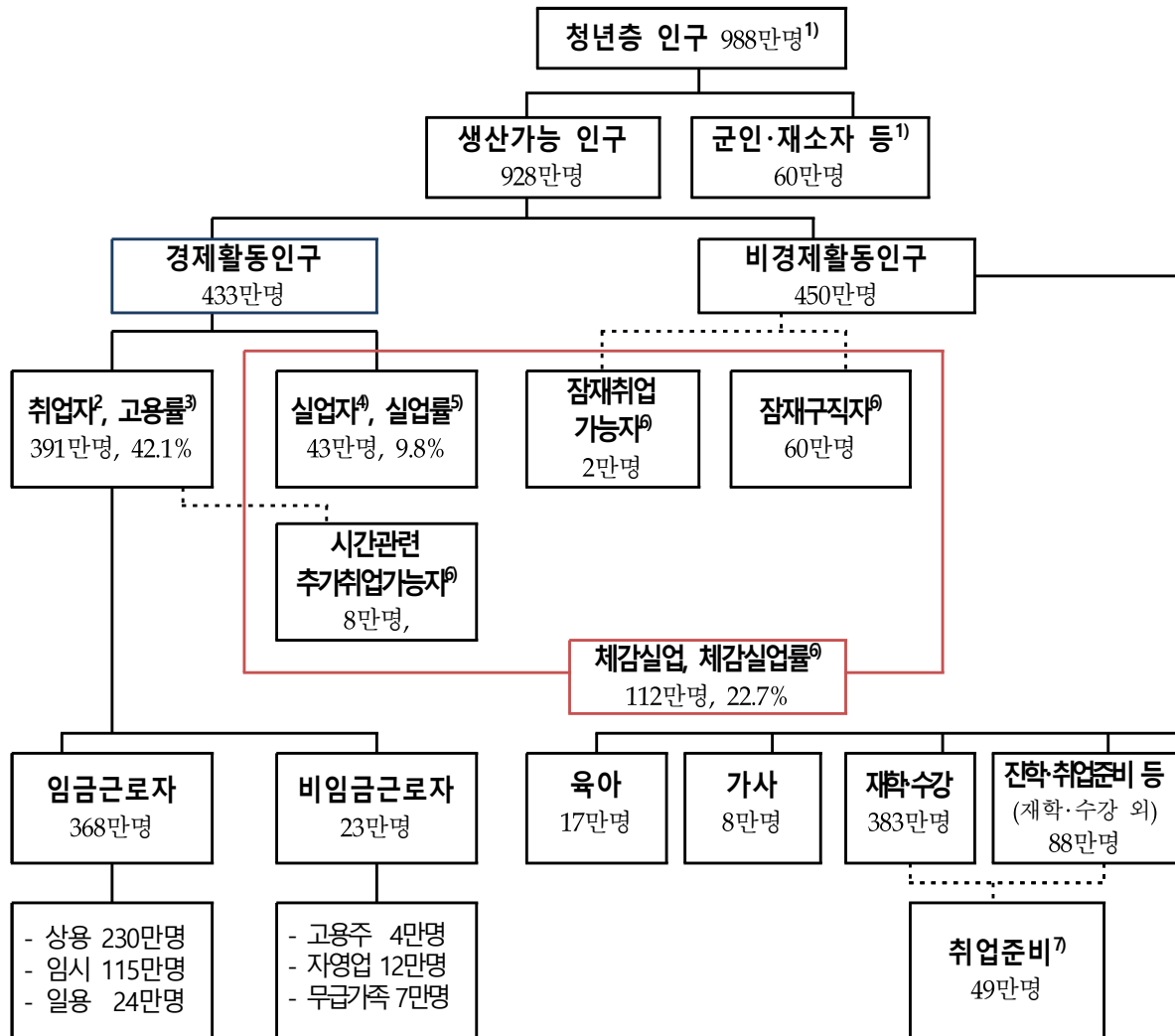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업 아카데미,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공공기관 채용인턴제 등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수혜되는 정책들은 일부에 그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감사원, 2016).
- 올해 정부는 이러한 청년문제를 인식하고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중대기업 지원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청년일자리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와 사업계획을 발표함(참고자료. 2).
- 이에 서울시도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주거 빈곤 등 악순환의 시스템에 놓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서울시 청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이상을 종합하면, 청년문제가 사회 구조적 문제점과 연관되고 청년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 발굴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⁷⁾
- 다만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기 위함이므로 그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결의안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7)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른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조희 결과, 관련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신함.
 - 행정자치위원회는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일자리·주거·기초생계보장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청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은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일례로 청년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시 청년 창업공간 등 청년활동 공간의 제공과 같이 주택공급부서와 경제정책부서의 협의가 중요할 수 있음.
 - 청년계층의 실업률과 주거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청년정책의 범위가 포괄적임을 감안해 불 때 10대 의회에서도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속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자료 1 <청년(15~29세) 고용 현황('17년 기준)>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1) 총인구: 경제활동인구상 인구(군인·재소자 등 제외) 928만명 + 군인·재소자 등 추정인원 약 60만명(일반사병·사회복무 등 50만명 + 직업군인·재소자)

- 2) 취업자: ① 조사대상주간(15일이 속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업 또는 사업체가 있으나 공장정비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3)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4) 실업자: 조사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고,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5)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6) 체감실업률에는 단시간 근로자중 추가 취업 희망·가능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 희망·가능자(잠재구직자), 구직활동은 하였지만 조사주간중 취업이 불가능한 자(잠재취업가능자)를 광의의 실업자로 포함

7) 취업준비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

참고자료 2

2018년 서울시 청년 정책 주요사업

구분	주요 세부실행계획	소관부서	
4개 분야 21개 사업			
1	설 자 리(청년의 사회참여 역량강화 및 안정적 생활지원)		
6개 사업	1-1. 청년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1-2. 희망두배 청년통장 운영	희망복지지원과	
	1-3.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범위 확대	청년정책담당관	
	1-4.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1-5. 청년인생설계학교(신규)	청년정책담당관	
	1-6. 청년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	
2	일 자 리(일자리 진입지원 및 안정망 구축)		
6개 사업	2-1.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2-2.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일자리정책담당관	
	2-3. 기술교육원 청년대상 직업훈련	일자리정책담당관	
	2-4. 초거 스타트업 지원(사업종료)	서울산업진흥원	
	2-4.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일자리정책담당관	
	2-5.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사업이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2-6. 취업날개(면접정장무료대여)서비스	일자리정책담당관		
3	살 자 리(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4개 사업	3-1.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 지원	임대주택과	
	3-2.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넓은 고시원, 여관·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사업명 변경)	주택정책과
		대학생희망하우징 → 청년 매입임대 주택(사업명 변경)	주택정책과
		반집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종료)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
	3-3.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임대주택과	
	3-4. 청년 주택보증금 지원	주택정책과	
4	놀 자 리(청년활동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5개 사업	4-1. 청년활력공간 조성 및 지원 확대	청년정책담당관	
	4-2. 민간청년활동공간(우리동네 무중력시대)발굴 및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4-3.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실행기반 강화	청년정책담당관	
	4-4.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4-5. 청년창업 공공시장 진입장벽 해소 및 참여기반 마련(신규)	청년정책담당관	

참고자료3 4대분야 중점 추진과제(청년 일자리 대책(18.3), 관계부처합동)

1.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청년지원을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 * ('18년) 30만원, 3개월 → ('19년) 50만원, 6개월(졸업·중퇴후 2년 이내 청년 대상)
- ▶ 기존산단 리모델링*, 신규산단 모범사례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문화·교통여건 등 개선으로 청년이 가고 싶은 산단을 조성
 - * '18년 시범산단 6개소 선정 → '22년까지 25개로 확대
 - ** 신규 국가산단 및 도첨산단 대상 '19.上 3개소 이상 착공('21.上 준공)
- ▶ 지역특구 세제지원시 청년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고용 1인당 감면한도 적용시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감면한도 상향
 - * (現) 상시근로자 1,000만원 → (改) 청년 상시근로자 2,000만원
- ▶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개편*
 - * ① 청년일자리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전용자금 신설(3천억원),
 - ②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이자환급제도 확대(1명 고용시 0.1 → 0.2%p ↓)
 - ③ 청년고용특별자금 2배 확대(年2천억→4천억원) 및 대출한도·금리우대
<(現) 2.74%(1억원 한도) → (改) 1명 고용 : 2.54% / 2명 이상고용 : 2.34% (각 2억원 한도)>
- ▶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중심 R&D 지원체계 개편
 - * R&D지원금 4~5억원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과기부 등 11개 부처, 1.2조 → 2,600명)
- ▶ 건축물 화재안전 조사 및 DB 구축 사업시 청년 중심 고용
 - 전국 215개 소방서별 합동점검단 편성·운영, 1개반 점검인력 3~7명
- ▶ 국유재산 총조사시 조사인력 50% 이상 청년 중심 채용('18년, 약 1,000명)
-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고용부, '18년 1,114억원)을 활용하여 고용 위기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사전컨설팅 등 지원
- ▶ 대기업이 협력사 일자리 창출 지원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부여
-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기업 우선 선정
- ▶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 확대로 연결되도록 신규채용·임금보전* 등 지원 강화,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등 생산성 제고 지원
 - * 現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月40~80만원) 및 임금보전(1인당 月최대 40만원) 지원

2. 창업 활성화

- ▶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일자리 매칭펀드(1천억원)*', '청년일자리 지원펀드(1천억원)' 등 신규 벤처투자 펀드 조성
 - * 민간 벤처캐피털이 고용창출 우수기업 후속투자시 정부가 1:1 매칭투자하는 펀드
- ▶ 도시재생 지역내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청년 창업(집수리·마을카페 등) 활성화 및 업사이클 분야* 청년 창업 촉진
 - * 재활용품 공유·거래가 가능한 '소재뱅크' 구축, 온라인 판매처 구축, 지재권 출원 등 패키지 지원 → '22년까지 450개 업사이클 기업 육성 (1,710명 고용창출)
- ▶ 청년창업농·어 사업을 확대하고, '복합형 청년몰'을 조성하여 청년상인 육성 ('18년, 400명+α 신규)
-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유휴공간(국유재산·주민센터 등)을 조사하여 특성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청년창업자에게 저가 공급
- ▶ 글로벌 창업특화 BI 운영(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국 엑셀러레이터 DB 구축(→ 매칭), TIPS·창업선도국 창업플랫폼(英 Enterprise-Hub 등) 연계

3.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 ▶ 일본·아세안 정책지원 집중(~'22년, 1.8만명)
 - (일본) K-Move스쿨 인원을 일본에 집중 배정(3,200명중 40% 이상)하고, 한일 대학간 3+1(韓 3년 + 日 1년→ 日 취업) 프로그램 활성화
 - (아세안) 청해진 대학* 지정 및 韓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을 확대 (K-Move스쿨 20% 이상)하고, 청년·진출기업간 연결 활성화**
 - * 대학의 해외취업 준비과정 운영지원 프로그램(아세안: '17년 1개)
 - ** 이음프로젝트 : 진출기업 소개, 취업알선 등 실전 기회 제공 → 채용 연결 지원
- ▶ 세제, 입지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외투기업 수준으로 확대
 - * ①(세제) 대기업 부분복귀시 조세감면 신설(법인·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
 - ②(입지) 국유재산 수익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특례(1%) 및 최대 100% 감면
 - ③(제도) 유턴기업 선정, 각종 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는 One-stop 시스템 구축
 - ④(기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 R&D사업 등 지원 우대

4. 즉시 취·창업할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개선**

- 동일기업 근속시 中企 의무종사기간 단축(2→1.5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허용

▶ **일반계고 비진학자 사전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고용센터-교육청 MOU, '18.7~),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확대('18.下, 2→3천명) 등 취업지원 강화**

▶ **병 봉급인상과 연계하여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 확대**

* 적립금 상향, 추가금리 및 비과세혜택 부여

▶ **유급지원병 보수 일반하사 수준 인상, 장기복무 선택 허용 등으로 유급지원병 기회 확대('17년 4,000명→'18년 이후 年 8,500명)**

▶ **기업 채용 공고시 서류전형 평가기준 공개 유도 및 워크넷에 AI 매칭 도입**

▶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확충 : 운영비 등 재정지원 강화**

- (사내대학) 설립·운영 요건 완화*, 시설장비비 등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용 지원

* 대학 위탁 및 중소기업 공동설립 허용, 입학 자격 확대

(<現>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 직원에 한정 → <改> 타기업 동종 업계 종사자도 허용)

- (계약학과) 입학 1년 만에 취업 후 학업을 병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운영대학에 재정지원(10개교, 교당 20억원)